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591
----------	-------

발의연월일 : 2026. 4. 23.

발 의 자 : 이상식 · 박지원 · 이광희
권칠승 · 정진욱 · 박정현
장경태 · 김영환 · 안태준
양부남 · 진성준 · 이개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득세는 지방세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세목임에도 세무조사 및 지방세 심판청구에서 높은 비율을 취득세가 차지하는 등 현행 제도하에서 과세표준 산정의 정확성과 납세의 성실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세목임.

한편,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은 성실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수입금액이상이거나 특정한 경우 사업소득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그 적정성을 세무사에게 확인하게 하고 그 확인서를 제출하여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있음.

이에 취득세의 경우에도 성실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원시취득 등에 대하여는 세무사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취득세 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등).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제10조의4에 따라 부동산등을 원시취득하거나 제7조제4항에 따라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취득당시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해당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 한다)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 취득당시가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5를 가산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 및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등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2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u></p> <p>① <u>제10조의4에 따라 부동산등</u> <u>을 원시취득하거나 제7조제4항</u> <u>에 따라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u> <u>변경하여 그 가액이 증가한 경</u> <u>우로서, 취득당시가액이 대통령</u> <u>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u> <u>우 해당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u> <u>(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u> <u>한다)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u> <u>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u> <u>취득당시가액의 적정성을 세무</u> <u>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u> <u>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u> <u>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u> <u>(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u> <u>다)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u> <u>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u> <u>한다.</u></p> <p>② <u>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u> <u>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u> <u>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u> <u>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u></p>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
세) ① ~ ③ (생략)
<신설>

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
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제20
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성실
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
의 5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
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